

# 2022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2022. 12. 27. 공고





## CONTENTS

1. 공급일정 .....	7
2. 신청관련 문의 .....	7
3. 공급현황 .....	8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15
5. 신청접수 안내 .....	27
6.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안내 .....	29
7. 심사서류 제출안내 .....	30
8.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	34
9. 동호추첨 및 당첨자·예비(입주)자발표 .....	35
10. 계약일시·장소 및 구비서류 .....	36
11. 신청 시 유의사항 .....	37
12. 단지 유의사항 .....	39
13. 단지별 주소 .....	42
[별표1] 임대금액 상세 안내 .....	43
[별표2]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48
[별표3] 소득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	49

---



# 2022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2022.12. 27. 공고)

-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2022년 2차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2. 27.) 현재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며, 공고일은 청약자격 및 가점사항 등 입주 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각 공급 구분 별 세부 자격 요건은 **15페이지(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주택 청약 접수는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으로 받습니다. 다만,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방문청약 접수를 시행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급적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청약 시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청약하시는 고객께서는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후에는 가점 산정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낮게 기입한 경우를 포함, 모든 수정이 불가합니다.
- 과거 입주시실이 있거나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 중인 분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 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입주 즉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각 단지의 계약 및 입주 일정은 준공일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으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인정될 수 있으니 세부사항은 <4-6 공통 신청자격-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관리번호: 2022-000928

## ▶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 도입

###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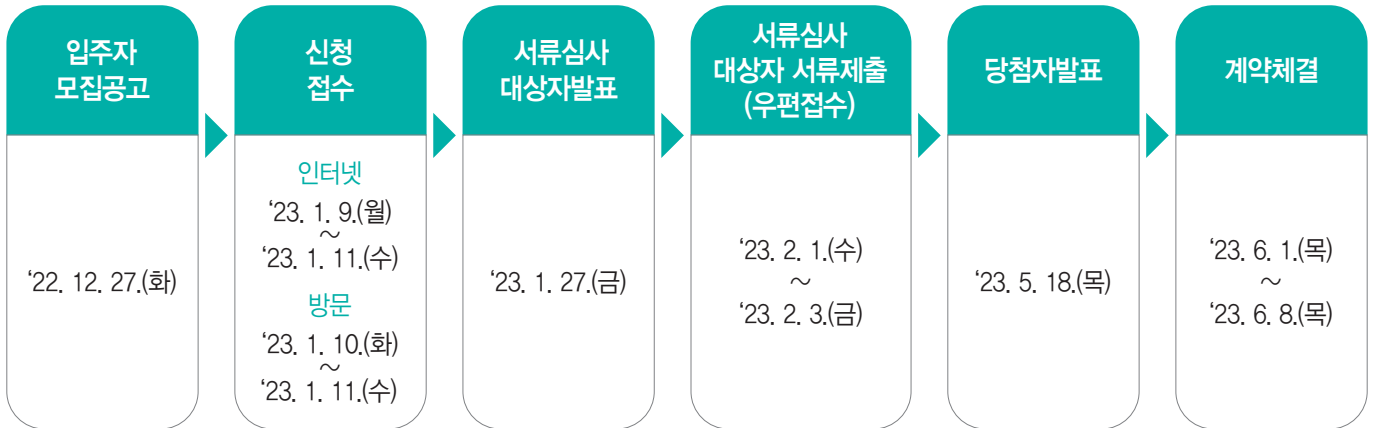
- 공고 시점에 공가가 없는 단지에도 대기자(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모집하는 방식
- 예비입주자는 공가 발생 시 예비 순번에 의해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대상이 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 금회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는 단지별 평균 퇴거율 및 계약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대상 단지 및 모집 예비입주자 수는 공고문 **8페이지(3. 공급현황)**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단지 및 평형에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을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대기 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 발생 시 입주 대기 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실제 입주 시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해당 단지에 공가가 발생하더라도 주거 이동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의 대기 순번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 자격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위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항목에 따라 동일 임대주택 유형에 예비자로 선정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예비입주자 명부에서 제외처리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당첨자 발표일) 2년이 경과할 때마다(첫 입주자격 재심사 시기: 2025. 5.17.) 예비입주자 대상 입주자격 심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심사를 위한 연락이 어려운 경우,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재심사 시 입주 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예비입주자 지위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심사 후 예비 공급 시에는 **재심사 시기 임대시세 및 상호 전환율을 새로 반영하여 주택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 동일 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공급대상(계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통합된 예비 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35페이지(9. 동호추첨 및 당첨자 · 예비(입주)자 발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계약자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발생 시 해당 단지, 주택형 예비자 중 ①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빠른 순 ②예비순번이 빠른 순으로 먼저 공급합니다.
- 해당 공고문 내 '우선 공급', '일반 공급'에는 예비입주자 모집의 의미를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 동일유형(국민↔국민, 행복↔행복 등)의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신청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예비입주자 선정은 ①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국민 · 영구 · 행복 · 통합공공임대)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처리 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서 공급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대상자가 **금회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종전 예비입주자 지위 및 순번은 자동 삭제**처리 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항목은 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타 사업주체(LH, GH 등)가 공급하는 임대주택도 포함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공급일정

### ▶ 공급절차 및 일정



- 인터넷 청약기간: 2023. 1. 9.(월) 10:00 ~ 1.11.(수) 17:00  
방문 청약기간: 2023. 1. 10.(화) ~ 1. 11.(수) 10:00~17:00  
※ 방문 청약 기간에는 인터넷 청약계종의 접수만 받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방문 청약은 단지별, 공급구분 별로 신청 가능 일정이 상이하오니 **공고문 28페이지의 「방문 인터넷 신청 안내 사항」**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여건상 단지별로 계약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 입주예정 : 2023년 7월~

- 신규공급 단지의 입주(예정)일은 단지별 준공일정 등으로 인해 계약체결 후 상세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재공급 단지의 입주(예정)일은 2023년 7월 예정이나 세대 하자점검 사유 등 공급 보류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신청관련 문의

-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 상담관련 유의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의 내용과 관련한 상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 없이 진행되오니 상담 정보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신청자 스스로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의해 결정하시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단지 평형별 평면도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팸플릿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 공급현황 : 총 1,620호

#### ▶ 임대 대상 및 금액 [신규 공급] 966호

자치구	단지명	공급 유형 (㎡)	공급구분	공급호수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세대별 계약면적(㎡)				
				계	우선	일반	계	계약금 (20%)	잔금 (80%)		전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	계약 면적	
합 계				966	489	477									
마포구	공덕동 크로시티 (공덕동 행복주택)	17	대학생	56	28	28	75,480	15,096	60,384	264,000	17.62	13.29	20.27	51.18	
			청년	소득있는	60	30	30	79,920	15,984	63,936	280,000	17.62	13.29	20.27	51.18
				소득없는				75,480	15,096	60,384	264,000	17.62	13.29	20.27	51.18
			주거급여수급자	22	11	11	66,600	13,320	53,280	233,000	17.62	13.29	20.27	51.18	
		17S	고령자	20	10	10	84,360	16,872	67,488	295,000	17.62	13.29	20.27	51.18	
		18	청년	소득있는	120	60	60	84,240	16,848	67,392	295,000	18.60	13.90	21.39	53.89
				소득없는				79,560	15,912	63,648	278,000	18.60	13.90	21.39	53.89
			주거급여수급자	20	10	10	70,200	14,040	56,160	246,000	18.60	13.90	21.39	53.89	
			18S	고령자	8	4	4	88,920	17,784	71,136	311,000	18.60	13.90	21.39	53.89
			36	신혼부부	44	22	22	176,000	35,200	140,800	616,000	36.67	26.51	42.18	105.36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 (개포주공4)	39	신혼부부	90	45	45	154,400	30,880	123,520	552,000	39.95	19.92	41.69	101.56	
			고령자	24	12	12	146,680	29,336	117,344	525,000	39.95	19.92	41.69	101.56	
		45	신혼부부	70	35	35	176,000	35,200	140,800	631,000	45.88	22.57	47.89	116.33	
			고령자	17	9	8	167,200	33,440	133,760	599,000	45.88	22.57	47.89	116.33	
	49	신혼부부	19	10	9	192,000	38,400	153,600	687,000	49.95	24.35	52.14	126.44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신반포3차·경남)	46	신혼부부	14	7	7	198,400	39,680	158,720	661,000	46.93	15.75	54.53	117.21	
			고령자	10	5	5	188,480	37,696	150,784	628,000	46.93	15.75	54.53	117.21	
		59	신혼부부	100	50	50	252,000	50,400	201,600	840,000	59.96	20.68	69.68	150.32	
고령자	24		12	12	239,400	47,880	191,520	798,000	59.96	20.68	69.68	150.32			
광진구	롯데캐슬리버파크 시그니처(자양1)	59	신혼부부	80	40	40	188,800	37,760	151,040	661,000	59.97	24.88	41.94	126.79	
			고령자	19	10	9	179,360	35,872	143,488	628,000	59.97	24.88	41.94	126.79	
마포구	맹그로브신촌 (노고산동 56-74)	30	대학생	7	4	3	78,880	15,776	63,104	276,000	30.49	28.13	26.46	85.08	
			청년	소득있는	8	4	4	83,520	16,704	66,816	293,000	30.49	28.13	26.46	85.08
				소득없는				78,880	15,776	63,104	276,000	30.49	28.13	26.46	85.08
서초구	반포르엘 (반포우성)	54	신혼부부	25	13	12	228,000	45,600	182,400	760,000	54.88	17.79	43.40	116.07	
			고령자	8	4	4	216,600	43,320	173,280	722,000	54.88	17.79	43.40	116.07	
		59	신혼부부	20	10	10	248,800	49,760	199,040	829,000	59.94	19.40	47.40	126.74	
양천구	신목동파라곤 (신월4)	59	신혼부부	13	7	6	159,200	31,840	127,360	570,000	59.71	19.94	41.77	121.42	
			고령자	4	2	2	151,240	30,248	120,992	541,000	59.71	19.94	41.77	121.42	
서초구	신반포르엘 (신반포13차)	49	신혼부부	17	9	8	203,200	40,640	162,560	678,000	49.98	16.70	46.99	113.67	
			고령자	3	2	1	193,040	38,608	154,432	644,000	49.98	16.70	46.99	113.67	
		59	신혼부부	9	5	4	243,200	48,640	194,560	809,000	59.99	20.66	56.41	137.06	
			고령자	2	1	1	231,040	46,208	184,832	769,000	59.99	20.66	56.41	137.06	
중랑구	월드움상봉 (상봉동 102-3)	28	대학생	2	1	1	60,520	12,104	48,416	211,000	29.00	6.20	3.56	38.76	
		32	주거급여수급자	2	1	1	60,000	12,000	48,000	210,000	32.65	6.98	4.01	43.64	
		45	신혼부부	2	1	1	109,600	21,920	87,680	383,000	45.08	9.63	5.54	60.25	



자치구	단지명	공급 유형 (㎡)	공급구분	공급호수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세대별 계약면적(㎡)			
				계	우선	일반	계	계약금 (20%)	잔금 (80%)		전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	계약 면적
광진구	테라펠리스건대4차 (화양동 2-10)	21	대학생	1	1	0	59,160	11,832	47,328	208,000	21.18	7.07	5.07	33.32
			대학생	2	1	1	82,960	16,592	66,368	291,000	29.60	9.88	7.08	46.56
		29	청년	5	3	2	87,840	17,568	70,272	308,000	29.60	9.88	7.08	46.56
			소득없는				82,960	16,592	66,368	291,000	29.60	9.88	7.08	46.56
			주거급여수급자	2	1	1	73,200	14,640	58,560	256,000	29.60	9.88	7.08	46.56
서대문구	힐스테이트홍은포레스트 (홍은2)	59	신혼부부	14	7	7	144,800	28,960	115,840	530,000	59.99	20.68	46.85	127.52
			고령자	3	2	1	137,560	27,512	110,048	503,000	59.99	20.68	46.85	127.52

- 신규 단지의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 비율만큼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 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공급대상(계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통합된 예비 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 미계약자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발생 시 해당 단지, 주택형 예비자 중 ①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빠른 순 ②예비순번에 따라 공급합니다.
- 공덕동 크로시티(공덕동 행복주택)은 서울특별시 소유의 건설형 단지입니다.
- 개포자이프레지던스(개포주공4),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 · 강남), 롯데캐슬리버파크시그니처(자양1), 맨그로브신촌 (노고산동 56-74), 반포르엘(반포우성), 신목동 파라곤(신월4), 신반포르엘(신반포13차), 율디움상봉(상봉동 102-3), 테라펠리스건대4차 (화양동 2-10), 힐스테이트홍은포레스트(홍은2)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매입형 단지입니다.
- 신규 공급 단지의 경우 해당 단지 준공 및 등기 사항 정리(소유권 보존 및 이전)가 예정보다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입주 시기가 지연되거나 전세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임대 대상 및 금액 [재공급] : 654호

자치구	단지명	공급 유형 (㎡)	공급구분	합계 (A+B)	금회 공급할 공가 입주자(A)		금회 공급할 예비 입주자 (B)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세대별 계약면적(㎡)			
					우선	일반		계	계약금 (20%)	잔금 (8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계				654	117		537								
					72	45									
강서구	가양동 1457-1 모듈러 행복주택	16	청년	8	2	1	5	38,160	7,632	30,528	105,000	16.05	16.16	1.30	33.51
			소득없는					36,040	7,208	28,832	99,000	16.05	16.16	1.30	33.51
강동구	강동리엔파크 14단지	29S	주거급여수급자	41	5	5	31	75,600	15,120	60,480	296,000	29.84	13.96	25.71	69.51
송파구	거여 리본타운	29	청년	27	2	2	23	48,960	9,792	39,168	159,000	29.58	15.10	31.01	75.69
			소득없는					46,240	9,248	36,992	150,000	29.58	15.10	31.01	75.69
강동구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40	신혼부부	12	1	1	10	101,600	20,320	81,280	398,000	40.92	21.87	33.75	96.54
강동구	고덕자이	48	신혼부부	6	1	0	5	141,600	28,320	113,280	494,000	48.68	18.80	37.10	104.58
구로구	고척리본타운 (고척동 156)	45	신혼부부	8	1	1	6	90,400	18,080	72,320	317,000	45.09	26.55	29.54	101.18
서초구	디에이치반포 라클라스	59	신혼부부	18	2	1	15	253,600	50,720	202,880	846,000	59.99	21.13	57.43	138.55

2022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자치구	단지명	공급 유형 (㎡)	공급구분	합계 (A+B)	금회 공급할 공가 입주자(A)		금회 공급할 예비 입주자 (B)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세대별 계약면적(㎡)				
					우선	일반		계	계약금 (20%)	잔금 (8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소득있는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	44	고령자	6	1	0	5	177,840	35,568	142,272	607,000	44.84	23.57	35.33	103.74	
강동구	래미안 명일역 솔베뉴	49	신혼부부	18	2	1	15	134,400	26,880	107,520	526,000	49.62	20.74	36.85	107.21	
서초구	래미안서초 에스티지S	59	신혼부부	14	2	1	11	240,800	48,160	192,640	803,000	59.50	26.88	42.56	128.94	
서초구	반포써밋	59	신혼부부	4	1	0	3	244,800	48,960	195,840	816,000	59.32	19.54	50.24	129.10	
서초구	방배아트자이	59	신혼부부	4	1	0	3	240,800	48,160	192,640	802,000	59.98	20.77	66.96	147.71	
은평구	백련산파크 자이	59	신혼부부	3	1	0	2	136,000	27,200	108,800	499,000	59.90	19.36	45.54	124.80	
동작구	보라매자이	44	신혼부부	6	1	0	5	135,200	27,040	108,160	451,000	44.39	14.09	25.10	83.58	
		59	신혼부부	6	1	0	5	183,200	36,640	146,560	610,000	59.94	24.20	33.89	118.03	
서대문구	북한산 두산위브2차	59	신혼부부	6	1	0	5	140,000	28,000	112,000	514,000	59.75	22.21	42.61	124.57	
강남구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	49	신혼부부	9	1	1	7	204,800	40,960	163,840	701,000	49.96	24.27	39.17	113.40	
서초구	서초그랑자이	59	신혼부부	12	1	1	10	248,800	49,760	199,040	830,000	59.98	24.79	61.64	146.41	
서초구	서초선포레	20	청년	소득있는	17	1	1	15	57,600	11,520	46,080	192,000	20.52	12.28	20.24	53.04
				소득없는					54,400	10,880	43,520	182,000	20.52	12.28	20.24	53.04
		21		주거급여수급자	9	1	0	8	51,000	10,200	40,800	170,000	21.58	12.84	21.27	55.69
노원구	수락리버타운	21	대학생	14	2	1	11	35,360	7,072	28,288	126,000	21.92	13.35	3.02	38.29	
구로구	숲에리움 (오류1동 청신호)	22	청년	소득있는	6	1	0	5	74,160	14,832	59,328	260,000	22.38	13.95	12.87	49.20
				소득없는					70,040	14,008	56,032	245,000	22.38	13.95	12.87	49.20
종량구	신내3-3 도시형생활주택	29	청년	소득있는	22	2	2	18	58,320	11,664	46,656	185,000	29.71	25.30	6.53	61.54
				소득없는					55,080	11,016	44,064	175,000	29.71	25.30	6.53	61.54
종량구	신내3-4 도시형생활주택	31	청년	소득있는	37	4	3	30	56,880	11,376	45,504	180,000	31.85	16.45	20.10	68.40
				소득없는					53,720	10,744	42,976	170,000	31.85	16.45	20.10	68.40
강서구	신마곡 벚산블루밍	49	신혼부부	18	2	1	15	158,400	31,680	126,720	436,000	49.65	18.70	35.54	103.89	
양천구	신정 파크사인	26	청년	소득있는	12	1	1	10	82,800	16,560	66,240	310,000	26.50	12.88	20.69	60.07
				소득없는					78,200	15,640	62,560	293,000	26.50	12.88	20.69	60.07
		41		신혼부부	5	1	0	4	146,400	29,280	117,120	549,000	41.81	18.84	32.65	93.30
마포구	신촌숲 아이파크	59	신혼부부	11	1	1	9	189,600	37,920	151,680	662,000	59.75	25.88	39.99	125.62	
은평구	응암역호성 해링턴플레이스	59	신혼부부	6	1	0	5	127,200	25,440	101,760	467,000	59.94	23.45	37.41	120.80	
송파구	잠실올림픽 공원아이파크	59	고령자	6	1	0	5	208,240	41,648	166,592	678,000	59.97	23.66	55.10	138.73	
성북구	정릉 하늘마루	26S	고령자	24	3	2	19	85,880	17,176	68,704	279,000	26.15	14.83	19.49	60.47	
구로구	천왕 연지마을1	20S	고령자	3	1	0	2	35,720	7,144	28,576	125,000	20.57	12.43	13.87	46.87	
		32	청년	소득있는	26	2	2	22	53,280	10,656	42,624	186,000	32.31	18.54	21.80	72.65
		소득없는	50,320	10,064					40,256	176,000	32.31	18.54	21.80	72.65		
구로구	천왕 연지마을 2	19	청년	소득있는	13	1	1	11	34,560	6,912	27,648	121,000	19.83	10.63	19.21	49.67
				소득없는					32,640	6,528	26,112	114,000	19.83	10.63	19.21	49.67
구로구	천왕 이편하우스 7	29	청년	소득있는	145	13	12	120	42,480	8,496	33,984	149,000	29.96	16.75	24.65	71.36
				소득없는					40,120	8,024	32,096	141,000	29.96	16.75	24.65	71.36
		29S		고령자	7	1	0	6	44,840	8,968	35,872	157,000	29.96	16.75	24.65	71.36

자치구	단지명	공급 유형 (㎡)	공급구분		합계 (A+B)	금회 공급할 공가 입주자(A)		금회 공급할 예비 입주자 (B)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세대별 계약면적(㎡)			
						우선	일반		계	계약금 (20%)	잔금 (8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구로구	천왕이펜 하우스8단지 (천왕지구 8단지)	36	청년	소득있는	21	2	1	18	59,040	11,808	47,232	207,000	36.87	23.23	19.28	79.38
				소득없는					55,760	11,152	44,608	195,000	36.87	23.23	19.28	79.38
도봉구	초행지봉-청동	20		대학생	6	1	0	5	39,440	7,888	31,552	145,000	20.78	10.00	-	30.78
구로구	항동 하버라인 지구 (9·10·11단지)	29S		고령자	7	1	1	5	55,480	11,096	44,384	195,000	29.69	17.35	27.23	74.27
				주거급여수급자	15	1	1	13	43,800	8,760	35,040	154,000	29.69	17.35	27.23	74.27
동대문구	힐스테이트 청계	40		고령자	16	1	0	15	98,040	19,608	78,432	351,000	40.60	22.08	35.12	97.80

- 재공급 단지는 ‘금회 공급할 예비입주자’에 기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퇴거 등으로 공가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이를 고려하여 공고된 숫자보다 많은 수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동일 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공급대상(계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통합된 예비 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 미계약자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발생 시 해당 단지, 주택형 예비자 중 ①**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빠른 순** ②**예비순번**에 따라 공급합니다.
- 가양동 1457-1 모듈러 행복주택, 강동 리엔파크 14, 거여 리본타운, 고척 리본타운(고척동 156), 서초 선포레, 수락 리버타운, 숲에리움(오류1동 청신호), 신내 3지구 3단지 도시형생활주택, 신내 3지구 4단지 도시형생활주택, 신정 파크사인, 정릉 하늘마루, 천왕 연지마을1, 천왕 연지마을2, 천왕 이펜하우스 7, 천왕 이펜하우스 8(천왕지구 8단지), 초행지봉-청동, 항동 하버라인 9·10·11단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의 자체 건설형 단지이며, 그 외 단지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매입형 단지입니다.
- 공급유형 중 주거약자용 주택(S형)의 경우 잔여 세대가 발생 할 시 동일단지, 동일면적간에는 S형 구분없이 공급대상을 바꾸어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재공급단지는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누수, 결로 등의 문제 발생으로 인해 당첨 대상 인원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임대 금액 전환 안내

### ○ 상호전환의 종류

상호전환 종류	효과	전환금액 제한	전환이율 ※변동 가능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 임대료 ↓	기준임대료의 80%까지 전환가능	6.0%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 임대료 ↑	기준보증금의 50%까지 전환가능	2.5%

### ○ 상호전환 적용 금액: p43. [별표1] 임대금액 상세 안내 참고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하나, 계산식에 의해 100만원 단위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할 시 임대보증금의 **5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단,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할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전환 이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시 임대료의 8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0%**입니다.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시, 최대전환 가능금액을 임대료의 최대 50% 전환에서 **최대 80%로 변경하는 ‘공공임대 전세형 입주자 모집’은 국토교통부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진행됩니다.**

○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최대80% 비율 적용대상 및 기간

- 개요 :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시, 최대전환 가능금액을 임대료의 최대 50% 전환에서 **최대 80%로 변경하는 ‘공공임대 전세형 입주자 모집’은 국토교통부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진행됩니다.**
- 대상자 : 2022년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최초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 적용기간 : 당첨자의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2년간)만 적용됨.
  - 따라서 최초계약 시 임대료의 8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임대보증금 ↑, 임대료 ↓)하여 거주하던 입주자도 재계약시 해당조건을 유지할 수 없고, 다시 50%로 변경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예시)

기존 임대조건(원)		임대료→임대보증금 최대전환비율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최초계약시	80%	148,000,000원	60,000원
100,000,000원	300,000원	재계약시	50%	130,000,000원	150,000원

- 당첨 후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동안 임대보증금(148,000,000원), 월임대료(60,000원)로 거주하던 세대도 2년 후, 재계약 시 임대보증금(130,000,000원, 월임대료(150,000원)로 변경하여 계약 체결 필수

※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상호 전환 시 전환 임대금액은 공고문 p43. [별표1] 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모든 공급 주택은 공급유형 별로 여러 평면 유형이 있을 수 있으며, 유사 평형이 하나의 공급 유형으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단지 동일 공급 유형에 신청했다라도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서로 다른 평면 유형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 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동일합니다.(단, 공급대상 별로는 상이합니다.)
- 공고문의 세대 당 계약 면적은 단지별 1개만 표기된 것으로 동일 공급유형이라도 평면유형 별로 계약면적 및 구조(복층 유 무 등)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평면도 및 유의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팸플릿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의 세대 당 계약 면적은 서울특별시 소유 매입형 단지의 경우 매매 계약 체결 당시 면적으로 표기, 건설형 단지의 경우 공고 시점 설계된 면적으로 표기하여 준공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팸플릿 혹은 추후 사전 점검을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적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되므로 계산상 소수점 셋째 자리의 처리 방식 차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우선공급 신청이 미달된 경우 남은 물량은 해당 공급대상별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해 공급합니다.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단, 서류심사 결과 허위기재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결격처리 되어 해당 공고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동일 단지 동일 공급 유형 내 특정 계층의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고 특정 계층의 신청자가 모집호수에 미달할 경우, 공사 방침에 따라 미달된 계층의 모집호수를 초과된 계층의 모집호수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공급 단지 별 · 해당 동호 별 인근에 위치한 도로나 유희 및 혐오 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임대주택 주변 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3. 단지별 주소] 참조)
- 향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공급 세대 수, 공급 면적, 평형, 입주일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면적이고,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주차장, 대피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공급단지	사업주체	시공업체	구조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난방방식
공덕동 크로시티 (공덕동 행복주택)	서울주택 도시공사	대우조선해양건설(주), 홍용종합건설(주), (주)왕선건설	무량판구조	-	(주)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주)건축사사무소테크뱅크, (주)팜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개포자이프레지던스 (개포주공4)	서울특별시	(주)GS건설	콘크리트구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아이티엠코포레이션외4	지역난방
래미안원베일리 (신반포3차,경남)	서울특별시	삼성물산(주)	RC(무량판포함)/ PC복합구조	삼성물산(주)	(주)토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한국환경종합건축사사무소	중앙난방/ 지역난방
롯데캐슬리버파크 시그니처(자양1)	서울특별시	롯데건설(주)	철근ONC 혼합구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팜코엔지니어링	개별난방
맹그로브신촌 (노고산동56-74)	서울특별시	한신공영	철근콘크리트구조	-	간삼종합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반포르엘아파트 (반포우성)	서울특별시	롯데건설(주)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신목동 파라곤 (신월4)	서울특별시	(주)동양건설사업	철근콘크리트구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이안종합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신반포르엘 (신반포13차)	서울특별시	롯데건설(주)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예인종합건축사사무소	지역난방
월드움상봉 (상봉동102-3)	서울특별시	가현종합건설(주)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나임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테리펠리스 건대4차 (화양동2-10)	서울특별시	(주)주성종합건설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을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힐스테이트 흥은 포레스트(흥은2)	서울특별시	(주)현대건설	철근콘크리트구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 (주)세종종합기술 (주)휴먼텍코리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가양동 1457-1 모듈러 행복주택	서울주택 도시공사	(주)신우건설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조립식철골구조	-	(주)팜코엔지니어링	개별난방
강동리엔파크 14단지	서울주택 도시공사	(주)대우조선 (주)해양건설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건원엔지니어링	지역난방
거여 리본타운	서울주택 도시공사	(주)원건설 외	철근콘크리트무량판구조 (중공슬라브)	-	(주)유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고덕센트럴푸르지오	서울특별시	(주)대우건설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한국환경종합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고덕자이	서울특별시	(주)GS건설	철근콘크리트무량판구조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태백	지역난방
고척 리본타운 (고척동 156)	서울주택 도시공사	(주)동우건설산업 외 2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	(주)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	개별난방
디에이치 반포 라클라스	서울특별시	(주)현대건설	철근콘크리트구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신동아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주)대원포비스 (주)지이엔씨	지역난방
디에이치자이 개포	서울특별시	(주)현대건설 (주)GS건설 (주)현대엔지니어링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정림/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주)한일MEC (주)토펙엔지니어링	지역난방
래미안 명일역 슬베뉴	서울특별시	(주)삼성물산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PC복합구조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가람건축 (주)경민엔지니어링 (주)건창기술단	개별난방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S	서울특별시	(주)삼성물산	철근콘크리트구조 (단위세대-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부대시설- 라멘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삼우CM건축사사무소	지역난방

공급단지	사업주체	시공업체	구조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난방방식
반포써밋 (삼호가든4차)	서울특별시	(주)대우건설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태백	지역난방
방배 아트자이	서울특별시	(주)GS건설	콘크리트벽식구조	건설공제조합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개별난방
백련산 파크자이	서울특별시	(주)GS건설	철근콘크리트구조	-	도원엔지니어링 에다종합설계감리 세정이에프씨	개별난방
보라매자이	서울특별시	(주)GS건설	철근콘크리트구조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우엔지니어링 태양앤씨 세정이에프씨	개별난방
북한산 두산위브 2차	서울특별시	(주)두산건설	철근콘크리트무량판구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해마종합건축	지역난방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	서울특별시	(주)현대산업개발	철근콘크리트구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태백	지역난방
서초 그랑자이	서울특별시	(주)GS건설	철근콘크리트구조	서울보증보험	(주)진광건설엔지니어링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지역난방
서초 선포레	서울주택 도시공사	(주)위일종합건설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개별난방
수락리버타운	서울주택 도시공사	(주)한일건설 (주)보령종합건설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	서울주택도시공사(자체감리)	개별난방
숲에리움 (오류1동 청신호)	서울주택 도시공사	(주)보미건설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주)동해종합기술공사	개별난방
신내 3지구 3단지 도시형생활주택	서울주택 도시공사	(주)한일건설 외	철근콘크리트구조	-	서울주택도시공사(자체감리)	개별난방
신내 3지구 4단지 도시형생활주택	서울주택 도시공사	(주)한일건설 (주)보령종합건설	철근콘크리트구조	-	서울주택도시공사(자체감리)	개별난방
신마곡 벽산블루밍	서울특별시	(주)벽산ENF	철근콘크리트라멘조 및 플랫슬라브	-	(주)TOP C&D 도시건축사사무소	지역난방
신정 파크샤인	서울주택 도시공사	(주)샘코건설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신촌숲 아이파크	서울특별시	(주)HDC현대산업개발	철근콘크리트구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	지역난방
응암역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서울특별시	(주)효성중공업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엠앤디종합건축사	개별난방
잠실올림픽공원 아이파크	서울특별시	(주)HDC현대산업개발	철근콘크리트구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 (주)아이비엔지니어링 (주)한국엔지니어링	지역난방
정릉 하늘마루	서울주택 도시공사	(주)대흥토건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천왕연지마을 1	서울주택 도시공사	(주)대들보건설 외 1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중공슬라브)	-	(주)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천왕연지마을 2	서울주택 도시공사	(주)대들보건설 외 1	철근콘크리트라멘조	-	(주)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천왕이편하우스 7	서울주택 도시공사	(주)우신건설	철근콘크리트라멘조	-	(주)목양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천왕지구 8단지	서울주택 도시공사	(주)동우건설 외 2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	(주)건원엔지니어링	개별난방
초행지봉-창동	서울주택 도시공사	(주)이담종합건설 (주)거양링커스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벽식/라멘구조	-	(주)남기봉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항동 허버라인 지구 (9·10·11단지)	서울주택 도시공사	동부건설(주)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11단지 공사 자체감리)	지역난방
힐스테이트 청계	서울특별시	(주)현대건설	철근콘크리트구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대명기술단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 신청 자격

#### 4-1 대학생 계층

##### ○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2. 27.)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 (대학생은 ①-㉓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㉔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 ①-㉓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①-㉔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6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 일반공급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2. 27.)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2·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남양주시·구리시·하남시·성남시·과천시·안양시·광명시·부천시·인천광역시·김포시·고양시·양주시)에 거주하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수원시·평택시·동두천시·안산시·오산시·시흥시·군포시·의왕시·용인시·파주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광주시·포천시·여주시·연천군·가평군·양평군)에 거주하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2. 27.)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u>해당자치구</u> 에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u>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u> 에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자

##### ▷ 배점(우선공급 1순위만 적용)

항목		3점	1점
거주	대학생	부모 모두 <u>서울특별시 외 지역</u> 에 거주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u>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u> 거주 (단, 부 또는 모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 모두 해당자치구 외에 거주해야함)
	취업준비생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3년 이상 거주 ※ 자치구 최종전입일이 2019. 12. 27.(당일포함) 이전인 자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3년 미만 거주 ※ 자치구 최종전입일이 2019. 12. 28.(당일포함) 이후인 자

-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배점 항목은 우선공급 1순위로 신청한 분에게만 적용합니다.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1순위	순위 → 배점 → 추천
	2순위	순위 → 추천
일반공급		순위 → 추천

- ※ 동일 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공급대상(계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천을 통하여 **통합된 예비 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
- ※ 대학생은 거주지 또는 대학소재지 기준요건을, 취업준비생은 거주지 기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합니다. (방송대학 · 통신대학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의 원격대학과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
- ※ **고등학교**는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를 말합니다.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를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점을 졸업시점으로 간주합니다.
- ※ 대학생 계층의 **월평균 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 수**는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단, 신청자 본인의 부모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됩니다.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의미합니다.
- ※ ‘재학 중인 대학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 · 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하며, ‘다음 학기’란 입주시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합니다.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2022. 12. 27.)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 대학교 졸업유예자는 대학생계층 중 대학생의 일반자격에 해당하며, 졸업유예자가 취업준비생으로 신청할 시 일반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결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4-2 청년 계층

## ○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2. 27.)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청년은 ①-㉓와 ②~⑤를, 사회초년생은 ①-㉒와 ②~⑤)을 모두 갖춘 자

- ①-㉓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2. 12. 28.~2003. 12. 27.)
- ①-㉒ (사회초년생) 나이에 관계없이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2) (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3)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일반공급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2. 27.)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2·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남양주시·구리시·하남시·성남시·과천시·안양시·광명시·부천시·인천광역시·김포시·고양시·양주시)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수원시·평택시·동두천시·안산시·오산시·시흥시·군포시·의왕시·용인시·파주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광주시·포천시·여주시·연천군·가평군·양평군)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2. 27.)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 우선공급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u>해당자치구</u> (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u>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u> (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 우선공급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거주 ※ 서울시 최종전입일이 2019. 12. 27.(당일포함) 이전인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에 3년 미만 거주 ※ 서울시 최종전입일이 2019. 12. 28.(당일포함) 이후인 자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신청 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을 정확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추천
일반공급	순위 → 추천

- ※ 금회 공급할 공가가 없는 예비입주자 모집의 경우 일반 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에 따라 예비입주자가 결정됩니다.
- ※ 동일 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공급대상(계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천을 통하여 **통합된 예비 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
-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 ※ ‘소득이 있는 업무 근거리’란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합니다.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①-④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합니다. 단, 대학 및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대학 및 고등학교의 범위는 대학생 계층과 동일)
- ※ ①-④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이내이지만 신청가능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종사중인 업무에 종사한 기간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하였을 경우 그 전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825일 이내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할인된 임대조건(동일단지의 동일면적 대학생 계층 기준)이 적용됩니다.
- ※ ①-④ 2)의 ‘퇴직’은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 ※ ①-④ 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 ※ 청년 계층의 해당 세대는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를 말합니다.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합니다.**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됩니다.
- ※ 사회초년생 중 재취업준비생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퇴직한 상태이므로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순위를 ‘거주지’ 기준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신청 시 ‘소득없음’으로 체크하여야 합니다.
- ※ 청약 신청 시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순위 관련 자치구를 입력하는 경우, 거주지/소득활동지 여부를 정확히 선택**하여야 합니다. 착오나 오기재로 증빙 불가 시 결격 처리됩니다.

## 4-3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2. 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④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④와 ③~⑤를 모두 갖추어야 함)

- ①-㉠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 ①-④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①-④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 (2015. 12. 28. 이후 출생)
- ② 해당 주택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퍼센트 이하)
  -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④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일 것
-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 일반공급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2. 27.)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2·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 남양주시 · 구리시 · 하남시 · 성남시 · 과천시 · 안양시 · 광명시 · 부천시 · 인천광역시 · 김포시 · 고양시 · 양주시)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수원시 · 평택시 · 동두천시 · 안산시 · 오산시 · 시흥시 · 군포시 · 의왕시 · 용인시 · 파주시 · 이천시 · 안성시 · 화성시 · 광주시 · 포천시 · 여주시 · 연천군 · 가평군 · 양평군)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일반공급 순위는 신청자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활동소재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한부모가족은 본인 기준으로만 신청 가능)

## ○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2. 27.)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 우선공급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우선공급 순위는 신청자 본인의 거주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우선공급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우선공급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내 3년 이상 거주 ※ 서울시 최종전입일이 2019. 12. 27.(당일포함) 이전인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내 3년 미만 거주 ※ 서울시 최종전입일이 2019. 12. 28.(당일포함) 이후인 자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배점은 신청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대표신청자) 본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및 거주지 기준으로 심사하며 신청자가 아닌 배우자(대표신청자가 아닌 예비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은 배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 신청 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을 정확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천
일반공급	순위 → 추천

- ※ 동일 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공급대상(계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천을 통하여 **통합된 예비 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 ※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⑤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를 의미합니다.
-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 ※ ‘소득이 있는 업무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합니다.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는 신청 가능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뿐만 아니라 재혼을 하였을 경우 재혼 전의 모든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2,555일 이내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두 명 중 1명을 대표신청자로 지정하여 대표자가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또한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 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습니다.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됩니다.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행복주택 신혼부부 계층으로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신혼부부계층 신청 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에 거주 중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배우자가 명기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중 발급 가능한 한 가지를 추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합니다.
-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여부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시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여부를 정확히 선택**하여야 합니다. 착오나 오기재 시 수정은 불가능하며 결격 처리됩니다.
- ※ 청약 신청 시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순위 관련 자치구를 입력하는 경우, 본인/(예비)배우자, 거주지/소득활동지 여부를 정확히 선택**하여야 합니다. 착오나 오기재로 증빙 불가 시 결격 처리됩니다.

#### 4-4 고령자

##### ○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2. 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일 것

- ※ **만 65세 이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1957. 12. 27.(당일포함) 이전에 출생한 자를 의미합니다.**
- ※ 고령자의 '해당 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⑤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를 의미합니다.

##### ○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2. 27.) 현재 기본자격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 우선공급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b>해당자치구</b> 에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b>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b> 에 거주하는 자

##### ▷ 우선공급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만 75세 이상	만 70세 이상 ~ 만 75세 미만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항목	3점	2점	1점
②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b>해당자치구</b> 에 5년 이상 거주 ※ 자치구 최종전입일이 2017. 12. 27. (당일포함) 이전인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b>해당자치구</b> 에 5년 미만 거주 ※ 자치구 최종전입일이 2017. 12. 28. (당일포함) 이후인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b>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b> 에 거주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호대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3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우선공급 배점 중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청자 본인에게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를 의미하며,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인 경우에는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해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으로 변경)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 동일 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공급대상(계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통합된 예비 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4-5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2. 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①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이 있을 것
- ※ 공고일 기준으로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⑤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를 의미합니다.

○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2. 27.) 현재 기본자격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우선공급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b>해당자치구</b> 에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b>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b> 에 거주하는 자

▷ 우선공급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u>해당자치구</u> 에 5년 이상 거주 ※ 자치구 최종전입일이 2017. 12. 27. (당일포함) 이전인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u>해당자치구</u> 에 5년 미만 거주 ※ 자치구 최종전입일이 2017. 12. 28. (당일포함) 이후인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u>해당자치구 외</u> <u>서울특별시에</u> 거주
②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우선공급 배점 중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청자 본인에게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를 의미하며,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인 경우에는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해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으로 변경)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 동일 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공급대상(계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통합된 예비 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4-6 공통 신청자격

▶ 입주자격 검증

- 주택소유여부, 소득 · 부동산 · 자동차 보유기준,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택소유 정보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자산(부동산, 자동차) 정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해당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며, 심사 과정 중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소명자료 미제출 시 자격결격으로 탈락 처리 됩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자동차, 금융자산 외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합니다.
- ※ 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 자동차 가액 산정 기준 관련 상세 내용은 **공고문 48페이지 [별표2], [별표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유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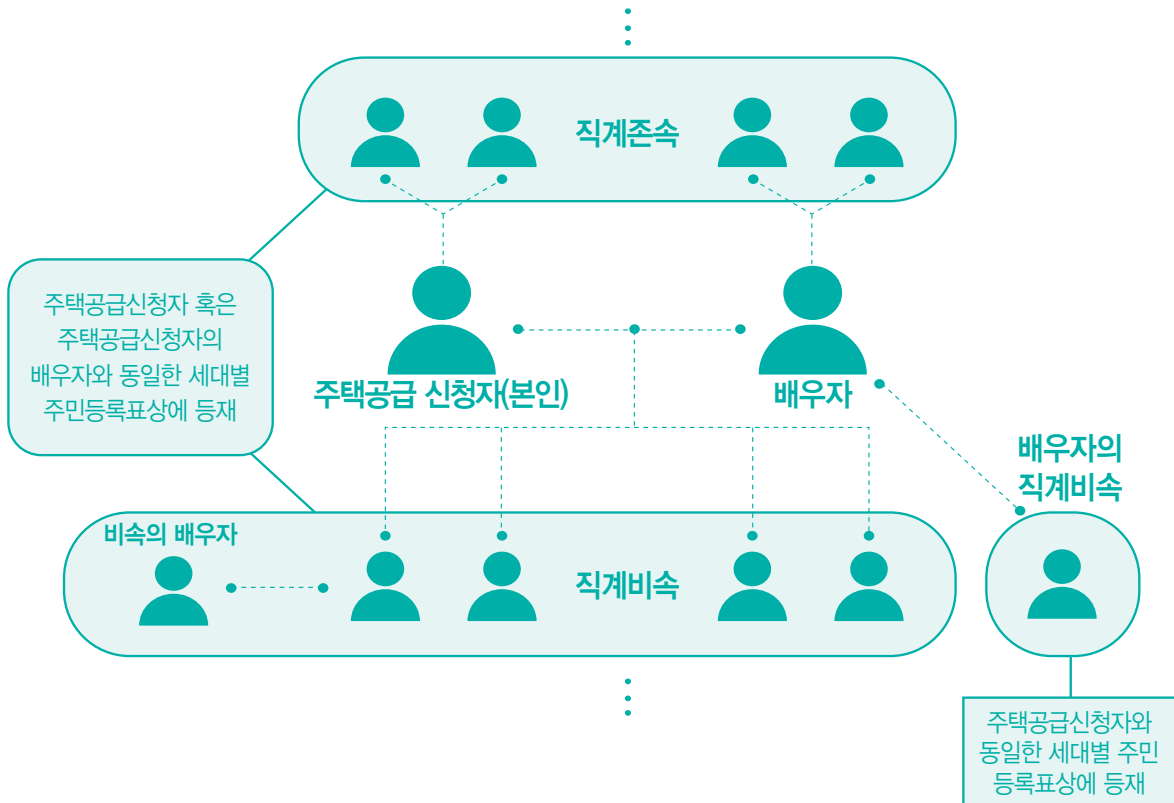
무주택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신청불가 -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지 않는 외국인 -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 외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 (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청년계층의 소득유무 및 신혼부부계층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에서 말하는 소득'의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임)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구분	소득기준							
	구분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대학생 계층 (본인 및 부모)	3,854,536	5,328,807	6,418,566	7,200,809	7,326,072	7,779,825
		청년 계층 (세대원인 경우 본인만 해당)						
고령자 계층								
신혼부부 계층 (예비, 한부모 포함)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신혼부부 계층 (예비 포함, 맞벌이인 경우)	-	6,297,681	7,702,279	8,640,971	8,791,286	9,335,790	

\*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는 1인당 평균금액\*(453,753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는 1인당 평균금액\*(약 544,503원)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위의 월평균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으로, 1인 가구는 기준금액에 20%p 가산, 2인은 10%p 가산한 금액입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 **대학생 계층**은 본인 및 부모의 소득만 해당됩니다. (이혼한 부모의 경우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만 산정)

\* **청년 계층**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단,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만 산정)

\*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 포함)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기준에 충족해야 하며,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소득자료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인정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 ※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금액을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봅니다. (금융회사의 카드로,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의 경우 부채인정불가)
- 대학생 계층(본인)은 총자산 기준 8,600만원 이하
- 청년 계층(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만)은 총자산 기준 28,8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계층·고령자는 총자산 기준 32,500만원 이하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 받은 정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자동차 기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합니다.
-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자동차가액 기준 산출에서 제외합니다.
- ※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본인)은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청년 계층(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만) · 신혼부부 계층 · 고령자는 현재가치 기준 자동차가액은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항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신혼부부 계층의 일반공급 순위는 제외)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대학생 · 청년 ·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⑤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청년계층의 사회초년생 일반자격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와 신혼부부 계층의 일반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자'는 연령이 아니라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산정시점은 공고일 기준)
- 금번 공고의 당첨자 또는 예비자가 되실 경우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의 예비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에 입주하실 경우 모든 예비입주자 자격은 상실되며 예비자 공급 시 제외처리 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5 신청접수 안내

### 5-1 인터넷 청약

#### "인터넷 청약, 스마트폰으로도 OK!", "24시간 신청가능(마감시간 내)"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신청은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로만 청약접수 받습니다.  
반드시 새로운주소(도로명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신청내용이 다른 경우 (자격요건(해당신청자격, 무주택여부, 월평균소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우선공급순위, 가점사항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명,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유무, 서울시(자치구) 최종전입일, 가점사항 등) 서류심사 시 해당가점이 차감되거나 신청자격 결격 처리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고문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해당서류를 사전에 발급받아 확인요망)
- ⇒ 청약 시 본인착오 또는 상담 시 착오안내 등으로 인해 본인의 기입한 내역은 절대 변경 불가능합니다.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 불가)

#### ○ 인터넷 신청

- 인터넷 신청을 위해서 사전에 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1가지를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2021.11. 구글 안드로이드 OS 정책 변경에 따라 공동인증서 이용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약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청약 시 공동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공동인증서나,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순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http://www.i-sh.co.kr/app))에 접속(PC 및 모바일) → 로그인(인증서 로그인) → 1단계(공고선택) → 2단계(단지선택) → 3단계(신청자격 확인) → 4단계(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 → 5단계(가점사항입력) → 6단계(인증서 로그인) → 7단계(나의 청약내역 확인)

#### ○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2023. 1. 9.(월) 10:00 ~ 1. 11.(수) 17:00**이며 신청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해 주십시오.

- ※ 인터넷 신청 시 최종확인 완료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는 신청 마감일시까지만 가능하니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마감 전에는 야간에도 인터넷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인터넷 청약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 **(개인용)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1가지 발급 및 소지**
- ※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일시적인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청약접수를 위하여 접속자가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본인이 해당하는 우선·일반공급에 제대로 신청하셨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공급 해당자가 착오로 일반공급으로 신청할 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5-2 방문 청약

- 방문인터넷 청약은 대기가 장시간(3~4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코로나19의 확산 위험도 있으므로 가급적 가정, 직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청약 신청 대상자 : 인터넷 청약 신청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고령자·장애인 등)
- 방문청약 신청기간 : **2023. 1. 10. (화) ~ 2023. 1. 11. (수) 10:00~ 17:00**
- 방문청약 신청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
- 단지 및 계층별 신청 일정

방문신청일	신청가능 계층	신청 가능 단지	
1. 10.(화)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신규 단지	개포자이프리지던스, 래미안원베일리, 롯데캐슬리버파크시그니처, 반포르엘, 신목동 파라곤, 신반포르엘, 월디움상봉, 테라팰리스건대4차, 힐스테이트홍은포레스트, 공덕동 크로시티
1. 11.(수)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중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자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재공급 단지	강동리엔파크 14단지, 디에이치자이개포, 서초선포레, 잠실올림픽공원아이파크, 정릉 하늘마루, 천왕연지마을1, 천왕이펜하우스 7, 향동 하버라인 지구(향동 하버라인 9·10·11단지), 힐스테이트 청계

- 방문 청약 방법: 공사 직원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청약을 위임한 방문자의 신청을 대행
- 청약 위임 시 필요 서류

본인 직접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 신청 시 (직계 존비속, 배우자 포함)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신청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공고일(2022. 12. 27) 이후 본인발급분만 인정 -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위임장(신청인의 인감도장 날인) 1통 *위임장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 방문접수 시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시면 원활한 방문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우선공급 신청 시 해당 순위,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도로명 주소, 자치구최종전입일 및 서울시최종전입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및 납입회차(가입 은행에서 순위확인서 발급 통해 확인 가능) 등을 사전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및 서울시 최종 전입일: 주민등록초본 상 서울시에 최종 전입한 날짜로 확인. 주민등록초본 지참 시 확인 가능
- 주택청약저축 납입회차: 가입은행 방문 또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순위(가입)확인서 발급하여 납입인정회차 확인 가능

## 6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안내

- 신청자가 청약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공급 및 모집세대수의 **상위 200%~400%내외(세부비율 하단 참조)**에 해당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하단의 심사서류 제출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서류제출기간 내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 12. 27.)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 ·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될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제출한 서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회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필요시 보완서류 제출 요청)하여 당첨자 및 예비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3. 1. 27.(금) 14:00 이후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에서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 서울주택도시공사 ARS(1600-3456)로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 ※ 홈페이지 및 ARS를 통해 발표 일시 이전에 조회하시는 경우 서류심사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심사대상자에 한하여 문자알림 예정

### ■ 심사서류 제출기간 : 2023. 2. 1.(수) ~ 2023. 2. 3.(금)

### ■ 심사서류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2023. 2. 3.(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 심사서류 제출주소

- (06336)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공급부 행복주택 담당자

###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 12. 27.)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

### ■ 서류심사대상자 선정비율

- **신규공급**
  - 기본기준: 공급세대수의 200% 내외
- **재공급**
  - 기본기준: 모집세대수의 200% 내외
  - 모집세대수가 10호 이하인 경우: 모집세대수의 300% 내외
  - 모집세대수가 5호 이하인 경우: 모집세대수의 400% 내외

## 7 심사서류 제출안내

-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 12. 27.)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바랍니다.(사업자등록증 사본은 기존 발급분 제출가능)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시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셨더라도 등기로 공통서류를 포함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결격'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 서류심사 결과 순위 및 가점 사항 변경으로 서류심사대상 커트라인 미만이 되는 경우, 우선공급 신청자가 우선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청자격 결격으로 제외 처리됩니다

### ▶ 공통 제출

	구비서류	비고	발급처
전원 제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li> <li>* 계층 별 동의서 제출 대상자 참고</li> <li>• 제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전원 한글 정자 서명, 인감날인(인감증명서 제출)</li> <li>-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li> </ul> </li> <li>※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 및 접수가 거부됨</li> <li>※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공동인증서로 동의 시 원본미제출 가능하나 스캔으로 올릴 시 반드시 원본제출</li> </ul>	SH 공사 양식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신청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li> <li>-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도록 상세증명서로 발급</li> <li>* 단,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모두 제출</li> </ul>	주민센터
해당자 제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관리 사무소
	임신진단서	태아를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 계층별 동의서 제출 대상자

분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대학생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신청자 부모	신청자 본인, 부모
청년 -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청년 -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 신혼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X

▶ 계층별 제출 서류

● 대학생

대상	용도	제출 서류		발급처	
전원 제출	자격 확인	가. 대학생	재학생	재학증명서	해당 학교 SH공사 양식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 양식) * 단,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필요	
			졸업유예자	졸업유예증명서	
	나.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자	우선 1순위 신청자 *취업준비생 제외	부모 주민등록등초본		주민센터	
	가족관계 단절 시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센터	
		실질적 부양자 확인용 각서		SH공사 양식	

● 청년

대상	용도	제출 서류		발급처	
전원 제출	소득 유무 확인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 이력 발급)		국민연금 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이력 발급)		국민건강 보험공단	
해당자	자격 확인	나. 사회초년생	최종 학력(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	해당 학교	
			재취업준비생	퇴직증명서	해당 직장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실업인정일 기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고용센터
			예술인	예술활동증명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소득이 있는 업무 근거지 기준 신청한 경우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직장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본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그 외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증명서	해당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해당 직장 또는 해당 세무서	
병역 의무 이행		병적증명서(군경력 기재하여 발급)		병무청	

● **신혼부부**

대상	용도	제출 서류		발급처		
전원 제출	자격 확인	가.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센터	
		나. 예비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센터	
				당사자 2인 신분증 사본	본인	
				세대구성확인서	공사 양식	
				공동신청확인서	공사 양식	
다. 한부모가족		위임장	공사 양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센터			
해당자	소득이 있는 업무 근거지 기준 신청한 경우	전원 제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 이력 발급)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이력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서류 제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직장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본인이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그 외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증명서		해당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해당 직장 또는 해당 세무서
		병역 의무 이행 중		병적증명서(군경력 기재하여 발급)		병무청

● **고령자**

대상	용도	제출 서류		발급처	
해당자	가점 확인	장애인	본인	장애인등록증(등록일 기재)	주민센터
			배우자	배우자의 장애인등록증 (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 한정)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 이전 등록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 이후 등록자)	국가보훈처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14급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보훈처		

● **주거급여수급자**

대상	용도	제출 서류		발급처	
전원 제출	자격 확인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해당자	가점 확인	장애인	본인	장애인등록증(등록일 기재)	주민센터
			배우자	배우자의 장애인등록증(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 한정)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국가보훈처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 이전 등록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 이후 등록자)	국가보훈처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국가보훈처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 서류심사 작성 양식 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심사 제출 서류 중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예시) 3곳(1),(2),(3) 모두 신청인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해당(성명 정자 작성 또는 인감증명서 도장날인(인감증명서 제출 필수))

신청자와의 관계	동의자 성명(1)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서명 또는 인)(2)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서명 또는 인)(3)	작성예시
신청자 본인	홍길동	1234567890-1	홍길동	홍길동	○
	홍길동	1234567890-1	인감도장 찍기	인감도장 찍기	○
	홍길동	1234567890-1	HONG	HONG	×
	홍길동	1234567890-1	홍	홍	×
배우자	김가나	1234567890-1	김가나	김가나	○
자녀	홍다라	1234567890-1	홍다라	홍다라	○
· · ·					

- 우편 제출 시 오류 제출이 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오류 제출로 인한 서류제출 기한 초과는 미제출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관련항목	유의사항														
<b>거주기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b></li> <li>•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width: 50%;">입주자격</th> <th style="width: 50%;">최대 거주기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학생, 청년 계층</td> <td style="text-align: center;">6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재계약 시 계층변경</b></li> <li>•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단,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li> <li>■ <b>재청약 기준</b></li> <li>•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공급대상(공급구분) 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li> <li>•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li> </ul>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b>갱신계약 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갱신계약자격</b></li> <li>•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단, 자동차·자산·주택소유 기준 초과 시 즉시퇴거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li> <li>•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 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li> <li>* 다만, 아래의 경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li> <li>- 청년 계층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일 것”,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li> <li>-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혼인중일 것”,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 요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li> </ul> </li> <li>※ 단,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제외 사항 없이 확인</li> <li>■ <b>갱신계약 시 임대조건</b></li> <li>•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li> <li>•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30%;">소득기준 초과 비율</th> <th colspan="2" style="width: 70%;">할증비율</th> </tr> <tr> <th style="width: 20%;">최초 갱신계약 시</th> <th style="width: 30%;">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10%</td> <td style="text-align: center;">12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초과 30%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20%</td> <td style="text-align: center;">13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130%</td> <td style="text-align: center;">14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 중 청년계층의 소득 활동이 변동되어 계약하는 경우에는 추후 갱신계약 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li> <li>• 단, 갱신 계약 시 자동차·자산·주택소유 기준 초과 시 즉시 퇴거해야 합니다.</li> </ul>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b>중복입주 금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임대인(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li> <li>• 행복주택의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가 현재 타 임대주택에 계약자로 거주하고 있을 시 기존의 임대주택 명도 후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며, 동 주택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li> </ul>														

## 9 동호추첨 및 당첨자 · 예비(입주)자 발표

### ○ 동호추첨

- 주택의 동호는 신청유형별로 동별, 층별, 향별, 형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합니다. 단, 주거약자용 주택(S형) 신청자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배정됩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층(1층~3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층간 소음이나 저층/고층 배정 등의 사유로 동호를 변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능)

### ○ 예비입주자

- 신규 단지의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재공급 단지는 3. 공급현황에 기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퇴거 등으로 공가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이를 고려하여 공고된 숫자보다 많은 수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 동일 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공급대상(계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통합된 예비 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 미계약자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발생 시 해당 단지, 주택형 예비자 중 ①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빠른 순 ②예비순번이 빠른 순으로 먼저 공급합니다.
  - 예비자 공급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공고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입주자에게 부여된 순번의 유효기간은 영구입니다. 다만, 동일유형(국민↔국민, 행복↔행복 등)의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신청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당첨자 발표일) 2년이 경과할 때마다(첫 입주자격 재심사 시기: 2025. 5.17.) 예비입주자 대상 입주자격 심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심사를 위한 연락이 어려운 경우,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재심사 시 입주 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예비입주자 지위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심사 후 예비 공급 시에는 **재심사 시기 임대시세 및 상호 전환율을 새로 반영하여 주택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자 공급일정은 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당첨자 발표

- 발표일 : 2023. 5. 18.(목) 14시 이후
- 당첨확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및 공사게시판, ARS 조회(1600-3456)
- 당첨자의 인적사항(개명) 및 주소, 연락처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우리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능합니다.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공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됩니다.



## 11 ● 신청 시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li> <li>주택소유,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li> <li>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li> <li>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단, 신청자격 중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만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에 근거하여 소득기준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을 적용하여 재계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li> </ul>
심사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사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li> <li>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li> <li>신청마감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li> <li>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를 해당 관할지역 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li> <li>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해당 관할지역 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li> <li>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li> </ul>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첨 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미통보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li> <li>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관할지역 센터에서 신청가능)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입주지정기간 내에는 전액 환불</li> </ul>
예비입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li> <li>동일유형(국민↔국민, 행복↔행복 등)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신청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li> <li>예비입주자가 타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에 입주하실 경우, 모든 예비입주자 자격은 상실되며 예비자 공급 시 제외처리 됩니다.</li> </ul>

관련항목	유의사항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li> <li>•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li> <li>•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임차인은 당첨된 날부터 4년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 제한됩니다.</li> <li>• 주택소유,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li> <li>•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 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아울러 청약 시 기재하지 못한 태아, 자녀 수는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제외되며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더라도 인정해 드리지 않습니다.</li> <li>•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입주지정종료일 이내 입주 및 입주 시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전환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일할 계산합니다.</li> <li>• 입주지정종료일 이후에 입주하여 전환하거나, 입주지정종료일 이전에 입주하더라도 입주한 이후 전환할 경우 전환보증금은 납부일로부터 일할 계산되지 않고 익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이 경우 매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li> <li>•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li> <li>•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금융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li> <li>•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 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li> <li>•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기 설치된 세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으며 현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철거 시 철거 비용이 발생합니다.</li> <li>• 신규 공급 단지의 경우 해당 단지 준공 및 등기 사항 정리(소유권 보존 및 이전)가 예정보다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입주 시기가 지연되거나 전세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li> <li>• 공공임대주택 거주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법 제7조제4항에 의거 입주민의 주거급여 임차료 분을 임대인(서울주택도시공사)이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으로 신청하지 않은 주거급여수급자도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 납부해야하는 임차료에서 본인의 주거급여를 뺀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납부 금액이 없을 수 있음)</li> <li>-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주거급여는 보장기관에서 수급자 본인에게 지급</li> </ul> </li> <li>•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li> </ul>

## 12 단지 유의사항

### ■ 공통사항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현장확인 불가능하므로 전자팸플릿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행복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복지, 보육, 문화, 체육, 가족지원 및 창업지원 등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지역편의시설(공간)을 설치하여 지자체 등 운영기관에 무상으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자동차 이용문화 변화 및 주차난 해소로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차장 일부(1면~2면)를 나눔카(카셰어링)사업에 제공하여 추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자팸플릿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작된 것으로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 상의 평면도와 달리 건축심의 및 인허가(사업승인변경) 과정에 따라 구조, 설비 및 발코니 위치, 모양, 면적 및 실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호수에 따라 전자팸플릿의 평면이 좌우 대칭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설계, 동별설계, 세대내부설계, 외부 및 내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 등이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질, 자재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당초 추진계획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당해 지구(또는 단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 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계실, 비상발전기실,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의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DRY AREA)이 일부 동주변에 설치되어 소음, 냄새 및 비상발전기 운전시 발생하는 매연 등에 의해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쓰레기함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냄새, 미관저해, 소음, 매연, 진동, 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유아용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경로당, 보행로, 야외 운동공간, 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대지 내 공지, 수경시설, 소방도로,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에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도로,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출차 주의등과 장내경보등에 인접한 일부 동은 경보음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비상발전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별배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동의 저층부 일부 세대는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내부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된 개별보일러(해당 단지만), 수전류, 배수관, 트랩(Trap) 등이 겨울철에는 동결 또는 동파 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입주 시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고 공가세대 등으로 인한 열손실로 난방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퇴거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시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입형 행복주택의 경우 분양주택과 비교하여 일부 시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저층세대의 경우 차로, 보행로 및 인근산책로, 기타 부대시설 등에서 실내가 투시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로 인하여 주변 동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며, 미관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혹한기 시설물동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배관에 설치된 열선으로 인해 겨울철 공용전기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기 설치된 세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으며 현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철거 시 철거 비용이 발생합니다.
- 지하수위관련 구조물 부력방지를 위해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지하수가 유출될 경우 하수도법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이용 조례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다세대 매입형 단지(공통) ■

- 단지별로 세대 내 옵션 설치 여부가 상이하며, 빌트인 가전 및 가구는 입주 전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세부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부단지는 계약자가 설치를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폭, 높이, 용량, 규격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단지는 계약자가 에어컨을 설치해야 하며, 희망하는 에어컨의 종류, 용량(규격) 등에 따라 별도의 배관 공사가 필요할 수 있고,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은 퇴거 시 원상을 복구 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부 단지는 기계식 주차타워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로 진입하기 위한 보행자 부출입구, 보도, 통로 등은 상가 입주자(방문객 포함)와 주택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개별 사항 ■

#### [ 공덕동 크로시티(공덕동 행복주택) ]

- 본 사업대상지 반경 300m부근에 지하철 5,6,9호선 공덕역, 지하철 공항철도 공덕역이 있습니다.
- 본 사업대상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항공기 운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대상지 서측으로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 서울여자중학교가 인접하여 있습니다.
- 본 사업대상지 북측으로 서울창업허브, 마포실버케어센터가 인접하여 있습니다.
- 상기 단지 및 주변 여건으로 발생하는 피해 및 불편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민원 또는 하자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단지 내에 다목적홀, 피트니스, 열람실, 마포구 사용시설(사회복지시설) 등의 지역편의시설이 있습니다.
- 주차장은 아파트 155대(지상 2대, 지하 153대), 지역편의시설 14대(지하), 근린생활시설 1대(지하)로 총 170대이며 지하주차장 주차구획은 일반형 주차구획[2.3m\*5.0m] 99대, 확장형 주차구획[2.5m\*5.1m] 48대, 경형 주차구획[2.0m\*3.6m]



15대, 장애인 주차구획[3.3m\*5.0m] 6대로 설치되어 있고 이중에서 여성전용 일반형 주차구획 10대와 여성전용 확장형 주차구획 8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를 고려하여 지하층 아파트 주동 출입구 근처에 장애인용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내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1대, 이동형 충전시설 1대를 설치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에 따른 전기요금이 발생합니다.
- 지하주차장 입구의 층고가 2,400mm로 대형 SUV차량, 차량 상부 부착물 설치차량, 화물차량, 생계형차량(탑차), 소형버스 등의 통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

- 임대 전세대 발코니확장 적용
  - 주방스타일업 : (주방가구(확장형), 와이드사각싱크, 터치형주방수전, 주방상판/벽 엔지니어드스톤마감, 미드웨이선반)
  - 현관아트월 + 픽처레일
  - 전동빨래 건조대, 무선충전콘센트(주방 아일랜드), 13" 주방TV 및 홈네트워크, 세탁실다용도 월판넬
  - 22mm 양면로이중창(조망형이중창) ※ 단, 외창의 접합유리부위는 유리 두께가 상이합니다.

### [ 맵그로브 신촌 ]

- 본 건물은 지하 6층 ~ 지상 15층의 도시형생활주택이며 민간임대주택 150세대, 공공임대주택 15세대로 총 165세대의 임대주택입니다.
- 공공임대세대에는 빌트인 가전제품(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동형 가구(책상, 침대, 옷장 등)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본 건물은 코리빙 하우스로 2개 층마다 모든 입주인이 사용할 수 있는 주민 커뮤니티공간(다이너&스토어, 워크룸, 시네마, 라운지, 릴렉스룸, 소셜키친, 라이브러리, 멤버스 라운지, 플렉스룸 등 8개 공간)이 제공됩니다.
- 주민 커뮤니티공간은 모든 입주인이 사용가능하며, 관리/운영비는 세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될 예정입니다.
- 주민 커뮤니티공간 인접세대의 경우 소음, 사생활 침해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도시형생활주택의 특성상 주차공간은 세대당 1면이 제공되지 않으며, 추후 운영방침에 따라 주차요금이 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계식 주차장만 이용가능하며, 일부 차종은 주차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 신반포 르엘 ]

- 서울주택도시공사 시설물 설치기준에 의거, 49타입 세대는 냉장고장이 설치되며 그로인해 일반분양주택에 설치되는 아일랜드장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시설물 설치기준에 의거, 임대세대에는 비데 분리형 양변기가 1개소 설치되며, 일반분양세대는 비데일체형 양변기가 1개소 설치됩니다.

### [ 테라펠리스 건대4차 ]

- 본 건물은 전세대에 빌트인 냉장구, 세탁기,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외의 가전은 타입에 따라 상이하게 제공됩니다.
- 행복주택 전세대 복층구조입니다.

**13** ● **단지별 주소** ※ 신규 단지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급구분	단지명	주소(지번)
신규	공덕동 크로시티(공덕동 행복주택)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0-4
	개포자이프레지던스(개포주공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89외 7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1
	롯데캐슬리버파크시그니처(자양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36번지 일대
	맹그로브 신촌(노고산동 56-74)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56-74
	반포르엘(반포우성)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4-1 외
	신목동파라곤(신월4)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489-3 일대
	신반포르엘(신반포13차)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52-2 외
	월드움상봉(상봉동 102-3)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02-3
	테라펠리스건대4차(화양동 2-10)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2-10
	힐스테이트홍은포레스트(홍은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338-5번지 일대
재공급	가양동 1457-1 모듈러 행복주택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457-1
	강동리엔파크 14단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28
	거여 리본타운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12-1
	고덕센트럴푸르지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210-1
	고덕자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521
	고척 리본타운(고척동 156)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56
	디에이치 반포 라클라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343
	디에이치자이 개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743
	래미안 명일역 솔베뉴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359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S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54
	반포 써밋(삼호가든4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342
	방배 아트자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3278
	백련산 파크자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766
	보라매자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724
	북한산 두산위브 2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3-25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88
	서초그랑자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5
	서초선포레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605
	수락리버타운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316
	숲에리움(오류1동 청신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359
	신내 3지구 3단지 도시형생활주택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826
	신내 3지구 4단지 도시형생활주택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831
	신마곡 벽산블루밍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904
	신정 파크샤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63-36
	신촌숲 아이파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462
	응암역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372
	잠실울림팍공원아이파크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514
	정릉 하늘마루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054
	천왕연지마을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14-116
	천왕연지마을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산13-13
	천왕이편하우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274
	천왕지구 8단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산19-1
	초행지붕-창동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531-5
	향동 하버라인 지구(향동 하버라인 9단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향동 136-5
	향동 하버라인 지구(향동 하버라인 10단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향동 135-57
	향동 하버라인 지구(향동 하버라인 11단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향동 184
	힐스테이트 청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1009

2022. 12. 27.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별표1 임대금액 상세 안내**

아래 최대 상호전환시 임대조건은 예시금액이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단지명	공급 유형 (㎡)	공급구분	기준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의 임대료 전환 (최대 50%)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최대 80%)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최대 50%)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 임대료 ↓	임대보증금 ↓, 임대료 ↑	임대보증금 ↑, 임대료 ↓	임대보증금 ↓, 임대료 ↑	
			계	계약금 (20%)	잔금 (80%)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공덕동 크로시티 (공덕동 행복주택)	17	대학생	75,480	15,096	60,384	264,000	37,740	342,600	117,720	52,800	101,880	132,000	
		청년	소득있는	79,920	15,984	63,936	280,000	39,960	363,200	124,720	56,000	107,920	140,000
			소득없는	75,480	15,096	60,384	264,000	37,740	342,600	117,720	52,800	101,880	132,000
		주거급여수급자	66,600	13,320	53,280	233,000	33,300	302,300	103,880	46,600	89,900	116,500	
	17s	고령자	84,360	16,872	67,488	295,000	42,180	382,800	131,560	59,000	113,860	147,500	
	18	청년	소득있는	84,240	16,848	67,392	295,000	42,120	382,700	131,440	59,000	113,740	147,500
			소득없는	79,560	15,912	63,648	278,000	39,780	360,800	124,040	55,600	107,360	139,000
		주거급여수급자	70,200	14,040	56,160	246,000	35,100	319,100	109,560	49,200	94,800	123,000	
	18s	고령자	88,920	17,784	71,136	311,000	44,460	403,600	138,680	62,200	120,020	155,500	
	36	신혼부부	176,000	35,200	140,800	616,000	88,000	799,300	274,560	123,200	237,600	308,000	
개포자이프레지던스 (개포주공4)	39	신혼부부	154,400	30,880	123,520	552,000	77,200	712,800	242,720	110,400	209,600	276,000	
		고령자	146,680	29,336	117,344	525,000	73,340	677,700	230,680	105,000	199,180	262,500	
	45	신혼부부	176,000	35,200	140,800	631,000	88,000	814,300	276,960	126,200	239,100	315,500	
		고령자	167,200	33,440	133,760	599,000	83,600	773,100	263,040	119,800	227,100	299,500	
	49	신혼부부	192,000	38,400	153,600	687,000	96,000	887,000	301,920	137,400	260,700	343,500	
래미안원베일리 (신반포3차경남)	46	신혼부부	198,400	39,680	158,720	661,000	99,200	867,600	304,160	132,200	264,500	330,500	
		고령자	188,480	37,696	150,784	628,000	94,240	824,300	288,960	125,600	251,280	314,000	
	59	신혼부부	252,000	50,400	201,600	840,000	126,000	1,102,500	386,400	168,000	336,000	420,000	
		고령자	239,400	47,880	191,520	798,000	119,700	1,047,300	367,080	159,600	319,200	399,000	
롯데캐슬리버파크 시그니처(자양1)	59	신혼부부	188,800	37,760	151,040	661,000	94,400	857,600	294,560	132,200	254,900	330,500	
		고령자	179,360	35,872	143,488	628,000	89,680	814,800	279,840	125,600	242,160	314,000	

단지명	공급 유형 (㎡)	공급구분	기준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의 임대료 전환 (최대 50%)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최대 80%)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최대 50%)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 임대료 ↓		임대보증금 ↑, 임대료 ↓		
			계	계약금 (20%)	잔금 (80%)				*최초 계약 시		*재계약 시		
맹그로브신촌 (노고산동 56-74)	30	대학생	78,880	15,776	63,104	276,000	39,440	358,100	123,040	55,200	106,480	138,000	
		청 년	소득있는	83,520	16,704	66,816	293,000	41,760	380,000	130,400	58,600	112,820	146,500
			소득없는	78,880	15,776	63,104	276,000	39,440	358,100	123,040	55,200	106,480	138,000
반포르엘 (반포우성)	54	신혼부부	228,000	45,600	182,400	760,000	114,000	997,500	349,600	152,000	304,000	380,000	
		고령자	216,600	43,320	173,280	722,000	108,300	947,600	332,120	144,400	288,800	361,000	
	59	신혼부부	248,800	49,760	199,040	829,000	124,400	1,088,100	381,440	165,800	331,700	414,500	
신목동 파라곤 (신월4)	59	신혼부부	159,200	31,840	127,360	570,000	79,600	735,800	250,400	114,000	216,200	285,000	
		고령자	151,240	30,248	120,992	541,000	75,620	698,500	237,800	108,200	205,340	270,500	
신반포르엘 (신반포13차)	49	신혼부부	203,200	40,640	162,560	678,000	101,600	889,600	311,680	135,600	271,000	339,000	
		고령자	193,040	38,608	154,432	644,000	96,520	845,000	296,080	128,800	257,440	322,000	
	59	신혼부부	243,200	48,640	194,560	809,000	121,600	1,062,300	372,640	161,800	324,100	404,500	
		고령자	231,040	46,208	184,832	769,000	115,520	1,009,600	354,080	153,800	307,940	384,500	
월디움상봉 (상봉동 102-3)	28	대학생	60,520	12,104	48,416	211,000	30,260	274,000	94,280	42,200	81,620	105,000	
	32	주거급여	60,000	12,000	48,000	210,000	30,000	272,500	93,600	42,000	81,000	105,000	
	45	신혼부부	109,600	21,920	87,680	383,000	54,800	497,100	170,880	76,600	147,900	191,500	
테라펠리스건대4차 (화양동 2-10)	21	대학생	59,160	11,832	47,328	208,000	29,580	269,600	92,440	41,600	79,960	104,000	
	29	청 년	대학생	82,960	16,592	66,368	291,000	41,480	377,400	129,520	58,200	112,060	145,500
			소득있는	87,840	17,568	70,272	308,000	43,920	399,500	137,120	61,600	118,640	154,000
		소득없는	82,960	16,592	66,368	291,000	41,480	377,400	129,520	58,200	112,060	145,500	
		주거급여수급자	73,200	14,640	58,560	256,000	36,600	332,500	114,160	51,200	98,800	128,000	
힐스테이트홍은 포레스트(홍은2)	59	신혼부부	144,800	28,960	115,840	530,000	72,400	680,800	229,600	106,000	197,800	265,000	
		고령자	137,560	27,512	110,048	503,000	68,780	646,200	218,040	100,600	187,860	251,500	

단지명	공급 유형 (㎡)	공급구분		기준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의 임대료 전환 (최대 50%)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최대 80%)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최대 50%)	
				임대보증금 ↓, 임대료 ↑		임대보증금 ↑, 임대료 ↓		*최초 계약 시		*재계약 시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계	계약금 (20%)	잔금 (80%)											
가양동 1457-1 모듈러 행복주택	16	청 년	소득있는	38,160	7,632	30,528	105,000	19,080	144,700	54,960	21,000	48,660	52,500
			소득없는	36,040	7,208	28,832	99,000	18,020	136,500	51,880	19,800	45,940	49,500
강동리엔파크 14단지	29S	주거급여수급자		75,600	15,120	60,480	296,000	37,800	374,700	122,960	59,200	105,200	148,000
거여리본타운	29	청 년	소득있는	48,960	9,792	39,168	159,000	24,480	210,000	74,400	31,800	64,860	79,500
			소득없는	46,240	9,248	36,992	150,000	23,120	198,100	70,240	30,000	61,240	75,000
고덕센터럴푸르지오	40	신혼부부		101,600	20,320	81,280	398,000	50,800	503,800	165,280	76,600	141,400	199,000
고덕자이	48	신혼부부		141,600	28,320	113,280	494,000	70,800	641,500	220,640	98,800	191,000	247,000
고척리본타운 (고척동 156)	45	신혼부부		90,400	18,080	72,320	317,000	45,200	411,100	141,120	63,400	122,100	158,500
디에이치 반포 리클라스	59	신혼부부		253,600	50,720	202,880	846,000	126,800	1,110,100	388,960	169,200	338,200	423,000
디에이치자이개포	44	고령자		177,840	35,568	142,272	607,000	88,920	792,200	274,960	121,400	238,540	303,500
래미안 명일역 솔베뉴	49	신혼부부		134,400	26,880	107,520	526,000	67,200	666,000	218,560	105,200	187,000	263,000
래미안서초 에스티지S	59	신혼부부		240,800	48,160	192,640	803,000	120,400	1,053,800	369,280	160,600	321,100	401,500
반포 써밋	59	신혼부부		244,800	48,960	195,840	816,000	122,400	1,071,000	375,360	163,200	326,400	408,000
방배아트자이	59	신혼부부		240,800	48,160	192,640	802,000	120,400	1,053,800	369,120	160,400	321,000	401,000
백련산파크 자이	59	신혼부부		136,000	27,200	108,800	499,000	68,000	640,600	215,840	99,800	185,900	249,500
보라매자이	44	신혼부부		135,200	27,040	108,160	451,000	80,000	647,600	207,360	90,200	208,100	240,500
	59	신혼부부		183,200	36,640	146,560	610,000	107,600	870,100	280,800	122,000	279,800	323,000
북한산 두산위브2차	59	신혼부부		140,000	28,000	112,000	514,000	70,000	659,800	222,240	102,800	191,400	257,000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	49	신혼부부		204,800	40,960	163,840	701,000	102,400	914,300	316,960	140,200	274,900	350,500

단지명	공급 유형 (㎡)	공급구분		기준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의 임대료 전환 (최대 50%)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최대 80%)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최대 50%)	
				임대보증금 ↓, 임대료 ↑		임대보증금 ↑, 임대료 ↓		*최초 계약 시		*재계약 시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계	계약금 (20%)	잔금 (80%)											
서초그랑자이	59	신혼부부		248,800	49,760	199,040	830,000	124,400	1,089,100	381,600	166,000	331,800	415,000
서초선포레	20	청년	소득있는	57,600	11,520	46,080	192,000	28,800	252,000	88,320	38,400	76,800	96,000
			소득없는	54,400	10,880	43,520	182,000	27,200	238,600	83,520	36,400	72,600	91,000
	21	주거급여수급자		51,000	10,200	40,800	170,000	25,500	233,100	78,200	34,000	68,000	85,000
수락리버타운	21	대학생		35,360	7,072	28,288	126,000	17,680	162,800	55,520	25,200	47,960	63,000
숲에리움 (오류1동 청신호)	22	청년	소득있는	74,160	14,832	59,328	260,000	37,080	337,200	115,760	52,000	100,160	130,000
			소득없는	70,040	14,008	56,032	245,000	35,020	317,900	109,240	49,000	94,540	122,500
신내3-3 도시형생활주택	29	청년	소득있는	58,320	14,832	59,328	185,000	29,160	245,750	87,920	37,000	76,820	92,500
			소득없는	55,080	11,664	46,656	175,000	27,540	232,300	83,080	35,000	72,580	87,500
신내3-4 도시형생활주택	31	청년	소득있는	56,880	11,520	46,080	180,000	28,440	239,200	85,680	36,000	74,880	90,000
			소득없는	53,720	10,880	43,520	170,000	26,860	225,900	80,920	34,000	70,720	85,000
신마곡 벽산블루밍	49	신혼부부		158,400	31,680	126,720	436,000	79,200	601,000	228,160	87,200	202,000	218,000
신정 파크샤인	26	청년	소득있는	82,800	16,560	66,240	310,000	41,400	396,200	132,400	62,000	113,800	155,000
			소득없는	78,200	15,640	62,560	293,000	39,100	374,400	125,080	58,600	107,500	146,500
	41	신혼부부		146,400	29,280	117,120	549,000	73,200	701,500	234,240	109,800	201,300	274,500
신촌숲 아이파크	59	신혼부부		189,600	37,920	151,680	662,000	94,800	859,500	295,520	132,400	255,800	331,000
응암역효성 해링턴플레이스	59	신혼부부		127,200	25,440	101,760	467,000	63,600	599,500	201,920	93,400	173,900	233,500
잠실올림픽공원 아이파크	59	고령자		208,240	41,648	166,592	678,000	104,120	894,900	316,720	135,600	276,040	339,000
정릉 하늘마루	26S	고령자		85,880	17,176	68,704	279,000	42,940	368,400	130,520	55,800	113,780	139,500

단지명	공급 유형 (㎡)	공급구분		기준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의 임대료 전환 (최대 50%)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최대 80%)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최대 50%)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 임대료 ↓		임대보증금 ↑, 임대료 ↓	
				계	계약금 (20%)	잔금 (80%)				*최초 계약 시		*재계약 시	
				계	계약금 (20%)	잔금 (80%)	월 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천왕연지마을1	20S	고령자		35,720	7,144	28,576	125,000	17,860	162,200	55,720	25,000	48,220	62,500
	32	청 년	소득있는	53,280	10,656	42,624	186,000	26,640	241,500	83,040	37,200	71,880	93,000
			소득없는	50,320	10,064	40,256	176,000	25,160	228,400	78,480	35,200	67,920	88,000
천왕연지마을 2	19	청 년	소득있는	34,560	6,912	27,648	121,000	17,280	157,000	53,920	24,200	46,660	60,500
			소득없는	32,640	6,528	26,112	114,000	16,320	148,000	50,880	22,800	44,040	57,000
천왕이펜하우스 7	29	청 년	소득있는	42,480	8,496	33,984	149,000	21,240	193,200	66,320	29,800	57,380	74,500
			소득없는	40,120	8,024	32,096	141,000	20,060	182,700	62,680	28,200	54,220	70,500
	29S	고령자		44,840	8,968	35,872	157,000	22,420	203,700	69,960	31,400	60,540	78,500
천왕이펜하우스8단지 (천왕지구 8단지)	36	청 년	소득있는	59,040	11,808	47,232	207,000	29,520	268,500	92,160	41,400	79,740	103,500
			소득없는	55,760	11,152	44,608	195,000	27,880	253,000	86,960	39,000	75,260	97,500
초행지봉-창동	20	대학생		39,440	7,888	31,552	145,000	19,720	186,000	62,640	29,000	53,940	72,500
향동 하버라인 지구 (9·10·11단지)	29S	고령자		55,480	11,096	44,384	195,000	27,740	252,700	86,680	39,000	74,980	97,500
		주거급여수급자		43,800	8,760	35,040	154,000	21,900	199,600	68,440	30,800	59,200	77,000
힐스테이트 청계	40	고령자		98,040	19,608	78,432	351,000	49,020	453,100	154,200	70,200	133,140	175,500

**별표2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해당세대(단,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공급신청자 본인,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주택의 범위 :
  1.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2.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
- 주택의 소유 기준일 :
  - 주택의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 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 소명방법 :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의 민원회신문(공문)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아서 서류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되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20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인 경우



**별표3 소득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

**▶ 소득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 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자 타 자 산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오토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소득, 자산 산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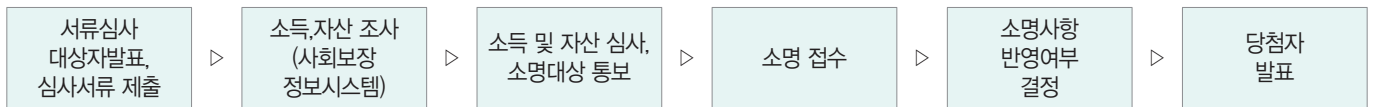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 확인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자산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향후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미제출시 자격결격으로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li> <li>•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li> <li>•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li> <li>•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li> </ul>
총자산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li> <li>•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li> </ul>
	<p>자동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li> <li>•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li>•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li> </ul>
	<p>금융 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li> <li>•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li> <li>•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li> <li>•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li>•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ul>

구분	산정방법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li> <li>·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li> <li>·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li> </ul>
부채 (총자산 산정시 자산합계 금액에서 차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마이니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의 경우 부채인정불가)</li> <li>· 공공기관 대출금</li> <li>·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li> <li>·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li> <li>·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li> <li>·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li>·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li> </ul>

▶ 소득 심사업무 처리 절차도



- ※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한.
- ※ 소득의 일반적인 조사 및 소명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훈령 고시 또는 지침에 의한.
- ※ 주택, 소득, 총자산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직접 소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소명 반영 여부 주요 예시

소명사항	반영여부
동일사업장 2개 이상 소득 중복	1개 사업장으로 반영
소득자료가 현재 소득과 상이	소명기간 내 원천기관 자료 수정 및 확인서 제출시 반영

- ※ 소명관련 주요사항을 예시한 것으로 소득 종류에 따라 소명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함.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www.i-sh.co.kr](http://www.i-sh.co.kr)

**콜센터 1600-3456**